

미국 정부의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yjjang@kiep.go.kr, Tel: 3460-1065)

김태윤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tykim@kiep.go.kr, Tel: 3460-1158)

남호선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snam@kiep.go.kr, Tel: 3460-1088)

1. 서론
2. 미국의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3.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평가
4. 정책적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누적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무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에 미국산 제품의 수출증진에 관심을 두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0년 3월 31일에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 의회에 제출하였음. -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3월 말 USTR이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SPS와 TBT 관련 부분을 개별 분리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었음. - 이 보고서는 주로 무역대상국의 SPS와 TBT 사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공개 취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TBT 8건, SPS 5건으로 총 13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국 의회는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의 SPS와 TBT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SPS와 TBT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협상 후에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SPS · 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양자간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의 상호 인정협약(MRA),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협력 강화가 필요함. - SPS · TBT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SPS · TBT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SPS 및 TBT를 포함하는 비관세조치문제에 대하여 WTO뿐만 아니라 OECD나 APEC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1. 서론

■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규모의 심화와 중국 등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흑자규모 확대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원인이 됨.

○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8,0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현재 4,19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¹⁾

○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7년 2,93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3,085억 달러를 기록함.²⁾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에 미국산 제품의 수출증진에 관심을 두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는 2010년 3월 31일에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 의회에 제출하였음.

–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정부가 동식물 관련 병해충이나 식품, 음료 및 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양한 조치를 의미함.

–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 간의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

○ 각국 간의 상이한 SPS와 TBT는 위생·검역조치 및 기술규제내용 조사, 생산설비 추가설치, 시험인증절차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어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

– Ron Kirk USTR 대표는 2009년 7월 피츠버그 제철소 연설에서 이 보고서를 2010년 3월에 최초 도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말 USTR이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SPS와 TBT 관련 부분을 개별 분리하여 제출되었음.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SPS와 TBT의 최근 동향과 함께 주요 교역국의 SPS와 TBT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현재의 협상 진행상황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주로 외국의 SPS와 TBT 사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공개 취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SPS 경우 총 48개국, TBT 경우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제품 수출에 대한 SPS와 TBT 및 협상 진행상황을 서술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TBT 8건, SPS 5건으로 총 13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미국 의회는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의 SPS와 TBT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Trade Enforcement Bill)을 논의하고 있음.

– SPS와 TBT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법안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Special 301조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

○ USTR은 SPS와 TBT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고, 미국 정부는 이 국가들과 협상 후에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함.

■ 본고에서는 올해 USTR이 최초 발표한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2010년 3월 18일자 보고서 「U.S. Current-Account Deficit Decreases i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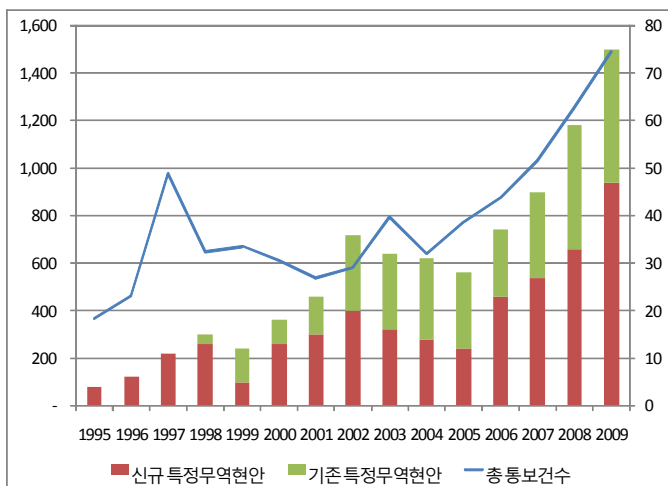
2) IMF DOT(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자료 참고.

2.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내용³⁾

가.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전체 주요 내용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1) SPS·TBT의 전반적 동향, 2) 관련 주요 이슈, 3) 주요 무역대상국의 SPS 및 TBT 현황 및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
- 먼저 TBT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1995년과 2004년 사이 증감을 반복하던 WTO 회원국들의 TBT는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그림 1]에서 기술규제통보문과 특정 무역현안⁴⁾ 모두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미해결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TBT 문제해결에 대해 WTO/TBT 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로, 최근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TBT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음.

그림 1. 기술규제 및 특정 무역현안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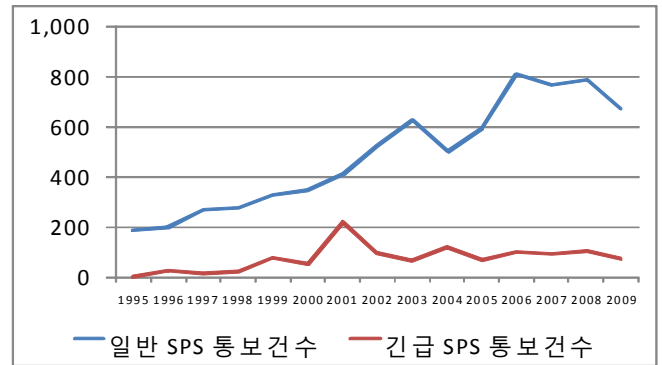
자료: TBT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재인용.

- SPS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일반 SPS 통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조금 감소한 약

650여 건이 통보되었음.

- 긴급 SPS 통보건수의 경우 2005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건수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SPS의 일반 및 긴급 통보건수



자료: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PS IMS).

- 최근 TBT의 주요 이슈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도 의무화, 해외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 인정에 대한 EU와 중국의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EU는 새로운 접근지침(New Approach Directives), ISO, IEC 등 국제표준제정기관에서의 영향력 확대,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EU 표준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함.
- 2004년 중국전략보고서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 및 기술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근 SPS의 주요 이슈는 신종 플루, 유전자변형생물체(LMO),⁶⁾ 광우병, 조류독감, 락토파민,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있음.
- 신종플루는 일명 돼지독감으로 불렸는데,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병한 이후 많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였음.
- LMO의 경우 이를 이용한 의약품, 식물성 치료제 등으로

3)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개별 보고서 형식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식 영문명칭은 각각 「2010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2010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임.

4) 특정 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이란 통보된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무역상대국이 WTO/TBT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뜻함.

5) China's September 2004 Strategy Report.

6)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 국제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한국에서는 주로 GMO로 많이 사용되어 왔음.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EU를 중심으로 LMO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라벨링을 요구하는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 광우병과 관련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군에 속한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을 포함한 32개 국가)가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s)⁷⁾을 적절히 제거하도록 권고함.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인도와 중국은 현재 미국산 가금류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락토파민(Ractopamine)⁸⁾의 경우 EU와 중국의 반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에 대한 합의의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2010년 현재 중국, EU, 대만, 태국은 락토파민이 잔류되어 있는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evels)⁹⁾에 있어 미국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일본, 대만의 기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무역대상국의 TBT에 관해서 총 20개국에 대해 총 66건의 기술규제 현황과 미국 업계의 의견 및 협상 진행상황을 각각 서술하고 있음.

표 1. TBT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국별 기술규제 건수

국가	규제 건수
중국	9
한국	8
EU, 브라질	6
멕시코	5
이스라엘, 대만	4
캐나다, 인도, 터키	3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2
에콰도르, GCC, 일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1

7) 특정위험물질(SRMs: Specified Risk Materials)이란 광우병 인자가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위(세포조직)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소의 연령 구분 없이 편도선(tonsils)과 돌창자 또는 소장 마지막 부위(distal ileum), 30개월 이상 소의 뇌(brain), 눈(eyes), 척수(spinal cord), 두개골(skull), 척추(vertebral column)로 명시하고 있음.

8) 돼지, 소, 칠면조의 지방성분을 줄이는 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품이며, 1999년 이후 미국의 돼지사육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여 26개 국가가 이를 허용하고 있음.

9)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일반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보다 높은 수준임.

- 중국 9건, 한국 8건, EU·브라질 6건 순으로 언급되어 있음.

■ SPS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총 48개국에 대해 총 134건의 SPS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 13건, 러시아 9건, 일본 8건, EU 7건, 한국 5건 등임.

표 2. SPS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국의 위생·검역조치 건수

국가	SPS 조치 개수
중국	13
러시아	9
일본	8
EU	7
호주	6
대만, 한국	5
인도, 멕시코, 터키	4
콜롬비아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2

나.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관련 TB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휴대폰과 관련하여 WIPI 탑재 의무화 법안에 대한 내용 소개 및 동향 보고

○ WIPI 탑재 의무화 법안은 2009년 4월에 폐지되어 현재 미국의 스마트폰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에너지효율 표시와 리튬건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한 상호 인정의 확대 필요

-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목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

-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에 대한 미국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확보

-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

○ 현재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유가식품의 판매를 2011년 1월 1일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 GMO 의무 표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우려 제기

- 냉장고 에너지효율 측정에 관해 우리나라 기업의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함.

- 특정 유형의 박막 태양전지(TFSP: Thin-film Solar Panels)만이 한국 표준(Korean Standard)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은 한국시장에 진출이 불가능함.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관련 SP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용타르색소¹⁰⁾ 금지를 제안하였으나, 국제표준기관(Codex)에서 이 색소를 허용하고 있어 추진이 보류됨.
- 광우병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민간업자들이 일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상업적 양해각서¹¹⁾를 체결함.
-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009년 약 2,425억 원(2억 1,600만 달러)의 쇠고기를 수입하여 미국의 네 번째 쇠고기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쇠고기 총수출액의 약 7% 수준임.
- 특히 한국 고급 신선육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한국은 미국산 체리 수입에 있어 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fumigation)¹²⁾ 처리를 요구함.
- 미국 수출업자들은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이 체리의 유통기한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하고 있음.
- 2009년 6월, 한국 정부는 내수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s)을 폐지하고 이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WTO에 통보
-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로 미국산 농약제품이 한국의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10) 식용타르색소(artificial synthetic colors)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주요 사용되고 있음.

11) 2008년 6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 간 합의한 상업적 양해각서(a commercial understanding)를 의미함.

12)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이란 체리를 밀폐된 공간에 넣고, 무색의 기체상태인 메틸브로마이드 가스를 뿌리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살충 및 살균을 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대부분의 과실류는 이러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을 거친 뒤 수입됨.

- 한국은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함.

- 특히 LMO법에서 정의한 다중형질 이벤트(multi-trait events)¹³⁾ 비의도적 혼입치(Adventitious presence)¹⁴⁾ 한국의 위해성 평가 검토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함.

3.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평가

- 세계경제위기 하에 기술규제 건수 및 위생·검역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장벽에 대해 NTE와는 별도로 SPS·TBT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미국의 SPS·TBT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미국이 SPS·TBT 문제에 대해 WTO 등 다자간 해결체제의 한계를 깨닫고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증거임.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별 SPS 및 TBT의 경우, 건수별로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상위에 분류되어 있음.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name and shame'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에 대한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이 적자 또는 적자로 전환되어가는 품목임.

- 특히 휴대폰과 자동차, 냉장고의 적자는 계속해서 큰 폭을 유지하고 있음.

13) 일반적으로 A해충 저항성을 지닌 GMO와 B해충 저항성을 지닌 GMO를 교배하여 A와 B 모두에 저항성을 지닌 GMO를 개발하였을 경우, 미국은 이를 따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추가로 하고 있음.

14) 비의도적 혼입치는 승인된 LMO와 미승인 LMO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승인된 LMO의 경우, 수입과정에서 원치 않게 다른 이벤트(종)들이 섞여올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하여 3%(일본은 5%, 유럽 0.9%임)까지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 적자 폭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TBT를 제거하여 미국 제품의 수출증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 주요 TBT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무역적자	휴대폰	리튬이온배터리	자동차	냉장고
2000년	-13,822	-2,321	-25	-5,128	92
2001년	-4,295	-4,090	-14	-6,674	11
2002년	-14,314	-4,218	-59	-7,257	8
2003년	-14,248	-5,626	-80	-8,528	5
2004년	-21,481	-8,683	-121	-10,673	7
2005년	-17,852	-6,279	-143	-9,786	-6
2006년	-15,181	-5,456	-144	-10,372	-14
2007년	-14,617	-6,660	-124	-9,862	-9
2008년	-15,017	-9,076	-128	-9,091	-25

주: 산업분류는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를 따른다.
자료: UN COMTRADE.

■ GMO는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GMO 생산은 미국 68%, 아르헨티나 22%, 캐나다 6%, 중국 3%를 차지하고 있어 GMO는 미국의 주력 수출상품임.¹⁵⁾
- 미국은 특히 신규 GMO 상품의 위해성 평가절차로 인하여 신속한 수출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SPS·TBT와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각국의 부당한 SPS와 TBT를 지적, 완화하려는 목적을 통해 세계 무역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국제교역에서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보고서는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전략적 EU 표준의 국제화와 기술규제를 통한 중국의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 국가에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를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WTO나 국제표준기관 및 국제시험소인정기구 협의체와 같이 SPS와 TBT를 다자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이미 존재함.

- 다자체제를 벗어나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SPS·TBT를 완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현안 중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했다기보다는 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현안들 또한 존재함.
 - 미국 또한 WTO/TBT 위원회에서 장난감 등 소비제품안전 개선법, 형광등의 시험절차, 연방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특정 무역현안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직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SPS와 TBT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반영한 기술규제 및 위생·검역조치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함.

- 기술규제와 위생·검역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관 또는 검역기관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4. 정책적 대응방안

가. TBT 관련 대응방안

■ 미국과의 원활한 교역은 우리나라 경제, 정치, 안보 등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상호 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학계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MRA를 적극 추천하고 있음.

15) A Food Foresight Analysis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A Report to the legislature, 2003.

- MRA는 국가 상호간 각기 다른 기술규제가 공통의 목적(예: 사람의 안전보호)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협약을 통해 상대방의 기술규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이 MRA는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설정과는 달리 수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생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대대적인 MRA 체결을 대비해 제도적,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며, 각 산업별 예상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기술규제의 무역에 대한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때,¹⁶⁾ 유형별 TF팀 구성 등 유연한 협상전략이 필요함.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 및 후속조치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TBT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경우 리튬건전지시험에 대한 대응은 기술표준원에서, GMO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응하는 등 항목별로 다른 기관에서 대응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미국 정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일관된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 기관 사이의 혼선과 반복적인 업무를 할 경우가 많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TBT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TBT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SPS 관련 대응방안

- 검역에 대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의를 더욱 더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다 잘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후생증대를 추구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검역협약체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년 각 품목에 대한 검역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검역협약체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 SPS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임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상호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양국간 검역협력이 강화되어 미국 현지 검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신규 LMO 위해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LMO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LMO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국 단독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OECD, WTO)를 통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산 쇠고기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국인이 즐겨 먹는 특정 위험물질(SRM)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인의 소비특성 상 창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광우병 인자가 많이 있다고 알려진 소장의 끝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특정 위험물질(SRM)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다. 전체적인 대응방안

■ SPS와 TBT 연구(통상, 법률, 제도 등) 강화 및 전담 전문가 TF팀 구성으로 미국 정부의 통상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SPS와 TBT를 도입할 경우 수출국에서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SPS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제기준이 국내기준보다는 느슨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국제기준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전담 TF팀 구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기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함.

■ 향후 우리나라가 SPS 및 TBT를 도입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 식용타르색소의 경우 청소년의 건강에 해

16) Chen, Otsuki and Wilson(2006), "Do Standards Matter for Export Success?" World Bank Polic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3809 참고.

로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도입이 보류되었고, 품목 수를 일부 감소하여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첨가물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 이후에 있을 SPS와 TBT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법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및 항목별 적절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 SPS와 TBT와 관련된 후속 법안은 'name and shame'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안 후 후속조치보다는 법안이 나오기 전의 선제적 조치가 더 중요함.
- 이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SPS 및 TBT가 상호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선제적으로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 또한 SPS와 TBT에 관하여 여러 사안이 WTO 내에서 무역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규제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 항목별 조사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 이후 미국 정부의 향후 조치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의 양자간 대응보다는 다자간의 협의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기술규제 및 위성·검역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안일 경우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SPS 및 TBT를 포함하는 비관세조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SPS와 TBT 문제에 있어 현 WTO 체제 내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만 고수할 뿐 직접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이 보고서가 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SPS와 TBT 관련된 사항을 WTO뿐만 아니라 OECD나 APEC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SPS, TBT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의미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SPS·TB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TBT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2009년 WTO/TBT 정례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았음.

- 따라서 WTO나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 내 SPS 및 TBT의 연구작업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KIEP